▣ 붙임: 종합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1) 신분 확인 및 소지품 관리

가. 신분 확인

- 시험장 입실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각자는 18:35까지만 입실 가능함 (이후 입실 절대 불가하며 재시험 응시 불가)
- 시험장 입실 전 학생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며, 학생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한하여 입실 가능
- 시험 중에도 학생증과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감독자의 확인에 협조해야 함
- 원활한 본인 확인 및 조기 퇴실을 위해 실물 학생증 지참 권장
- 모바일 학생증만 소지한 경우 시험 종료 시각인 20:30까지 퇴실 불가(시험 중 학생증 확인이 필요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야 하므로 확인 불가. 따라서 시험시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20:30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퇴실 가능)

나. 소지품 관리

- 공간이 협소하여 개인 소지품은 최소화할 것(학생증을 제외한 모든 개인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보관)
- 뚜껑을 닫아 잠글 수 있는 음료에 한하여 소지 가능
- 휴대전화 및 모든 개인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보관해야 함(무음·진동 모드 불가)
- 안경을 착용한 경우, 종류에 관계 없이 시험 중에 감독관의 확인 절차가 있을 예정이므로 가급적 렌즈 착용 권장

2) 전자기기 및 외부 자료 사용 금지

가. 시험장에 설치된 PC 및 배부된 USB의 지정된 시험 파일 외에 다른 자료나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나. 18시 10분 이후부터 종이, 필기구, 서적, 노트, 메모 등 일체의 외부 자료 사용 금지

다. 전자·통신기기(초소형카메라, AI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와 외부 자료(서적, 노트 등)의 사용 일절 금지

- 특히 AI 스마트안경 등 촬영·녹음·정보 검색·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기기의 보관 등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함

3)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근거:「학생 징계 규정」 및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 부정행위 처리 지침」

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① 부정행위 시도 및 감독자 지시 위반
② 부정행위 사전 준비
③ 허용되지 않은 자료·정보·기기 등의 이용
④ 대리시험 및 시험 관련 정보 유출

나. 부정행위는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함

다.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된 경우 감독자는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교육대학원 내부 기준에 따라 종합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4) 시험 응시 및 답안지 제출

가. 시험 중 USB 또는 PC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즉시 손을 들어 감독자에게 알릴 것

나. 문제지 및 답안지 파일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일을 삭제·이동해서는 안 되며, 배부된 파일 그대로 사용해야 함

다. 2과목 응시자는 각 과목의 답안지 파일에 답안을 작성하고, 두 파일이 모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야 함

라. USB 보안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마. 시험문제 및 답안지 파일은 시험 종료 후에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

나. 시험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 전 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시험 당일 감독자의 안내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함

※ 종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교육대학원 내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징계 규정」

제2조(징계의 사유)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5.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학교건물에 무단히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학교 기물의 손괴,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
9.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
10.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1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0.13.〉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 부정행위 처리 지침」

제3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에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유형) ①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의 시도 및 감독자 지시 위반
   가. 시험 중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나.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답안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AI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통신기기의 제출·보관 등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행위
2. 부정행위의 사전준비
   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자료, 메모 등을 사전에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나. 시험장 책상, 벽, 신체 등에 답안 또는 관련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둔 경우
   다. 제1호 다목의 전자·통신기기를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허용되지 않은 자료·정보·기기 등 부정한 수단의 이용
   가. 시험 중 다른 응시자 또는 외부인의 답안이나 시험 관련 정보를 부정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자신의 답안 또는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및 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시험 중 참고·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서적, 노트, 메모 등 자료나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 AI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통신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 관련 정보를 검색·확인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하여 답안을 생성·확인하는 행위
   라.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중복 로그인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특수키·통신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대리·공모 등 부정행위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
   나. 시험문제 또는 정답을 사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촬영·복제·반출·전송하여 타인에게 제공·유출·유포한 경우
   다. 그 밖에 타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가 실제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